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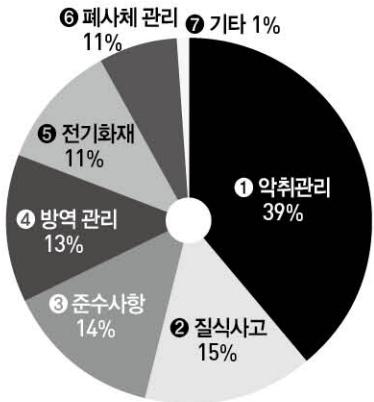
축산악취 관리 농가(1,070호) 1차 점검 결과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

◆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자체와 협력하여 축산악취 민원 등이 많은 농가 1,070곳*을 대상으로 5.18. ~ 7.10. 까지 축산악취, 가축분뇨처리, 사육밀도 등 축산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한 결과, 507건의 미흡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.

* 축산악취농가(1,070) 현황 : 돼지 947곳, 가금 81곳, 한우 23곳, 젖소 19곳

507건의 미흡 유형 분석 결과



- ①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 악취 관리 미흡 199건(39.3%)
- ② 위험안내 스티커 미부착 등 질식사고 예방 미흡 76건(15.0%)
- ③ 축사주변 청소 미흡, 축사내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등 농가 준수사항 위반 72건(14.2%)
- ④ 신발소독조·울타리 미설치 등 소독·방역 관리 미흡 65건(12.8%)
- ⑤ 전선노후화 등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 55건(10.9%)
- ⑥ 퇴비사 내 폐사체 방치 등 폐사체 관리 미흡 33건(6.5%)
- ⑦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유출 등 축산관련 법령 위반 7건(1.3%)

◎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한(즉시~3개월)을 부여하고, 해당 기한 내에 농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, 농가별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.

* (즉시 조치) 신발소독조 미구비·소독기록부 미비치 등, (1개월) 출입통제 안내판, 차량진입 차단바 미설치 등, (3개월) 범위내 설치기간 고려 울타리 설치 및 축산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

○ 조치기한을 부여받은 농가가 조치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.

- 또한, 약취 등 위반사항이 개선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평가 후, 현장 확인을 거쳐 관리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, 새로이 민원이 제기되는 축산약취 농가 등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에 추가하는 등 축산약취 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.
- 한편, 가축분뇨 무단방출, 축산업 변경신고 누락 등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, 고발 등 조치도 이루어졌다.
- ◎ 또한, 축산농가가 축산관련 법령(축산법, 가전법, 가축분뇨법 등)상의 약취 관리, 사육밀도 등 다양한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통합 자가진단표를 제공한다.

《주요 과태료 부과, 고발 조치 사례》

위반사례	처분 내역
◆ ○○농가는 퇴비사에 있는 가축분뇨 관리 미흡으로 빗물에 의해 공공수역으로 유출	▷ 가축분뇨법에 의거 고발 조치
◆ ○○농가는 약취 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(기준치 30배 초과) 하여 개선 명령했으나, 미 이행	▷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명령 1개월(20.9.7 ~ 10.6)
◆ ○○농가는 축산업 변경신고 없이 장기간 휴업, 축사 방치	▷ 축산법에 따른 변경신고(휴업) 누락으로 과태료 부과
◆ ○○농가는 2개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적정사육밀도 기준 초과를 숨기기 위해 휴업증인 농장명의로 돼지 출하 현황 허위 신고	▷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변경신고(휴업) 누락, 과태료 부과 ▷ 축산물이력제법에 따라 이력제 거짓 신고로 과태료 부과

- 농식품부는 ‘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축산약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과제’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점검결과로 볼 때, ‘축산농자가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고, 가축분뇨 및 축산약취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, 축산약취 문제는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고 하면서, 농가 스스로 축산관련 법령(축산법, 가전법, 가축분뇨법 등)상의 준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,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와 함께, 농가들이 위반사항을 개선하고, 축산약취 및 가축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 관리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